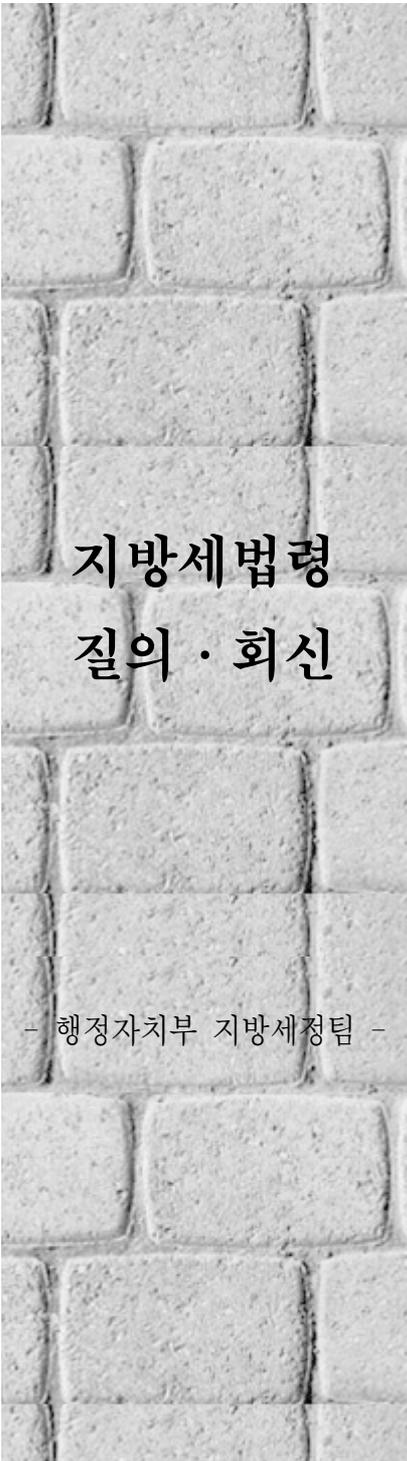


◆ 질의와 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1. 내향선박 선원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주민세(근로소득)납세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내향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에 대한 주민세(근로소득 특별징수분) 및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지를 선박법 규정에 의한 선적항, 내향선원의 모집·채용·사후인력 관리 및 급료지급 등 일련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만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소, 항만소재지 위치와 관계없이 내향선원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중 어느 곳을 납세지로 보아야 하는지 관하여 질의 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75조제4항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소득세할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종업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여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인적설비)의 근무지가 유동적인 경우 납세지의 귀속은 종업원이 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의 지위 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근무지가 유동적인 내향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에 대한 주민세(근로소득세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선박관리 및 선원 인력관리, 급료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정당한 납세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는 사무소를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선박법상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를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정-1775, 2005. 7. 20)

2.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정당한 납세지에 관한 질의

【질 의】

법인격없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할 경우 양도재산 소재지, 부동산등기부상 종중 주소지, 종중 등록지, 세무서 신고당시 사무실 소재지, 종중 대표자 주소지 중 어느 곳을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통칙 6-1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되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종중사무를 주관하는 장소(종중 사무실 등)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지 않은 이상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도 ○○시)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착오 납부된 지방자치단체(△△시 △△구, □□도 □□시)로부터는 과오납을 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하고 정당한 납세지(○○도 ○○시)에 주민세를 새로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정-1625, 2005. 7. 12)

3.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결여한 압류처분의 효력여부 관련 질의

【질 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의 취소시 체납처분의 효력발생에 통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1. 현황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소통지를 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충의견

〈갑 설〉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 유〉

결손처분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징수절차를 중지 내지는 유보하는 절차로서 체납된 조세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손처분시에는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취소시에만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손처분취소 후 통지를 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한 부동산의 압류는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을 설〉

압류의 효력이 없다

〈이 유〉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결손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사료되고,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한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세

정-6204, 2005. 6. 20)

3.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신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7. 2003두12363),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서 그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7. 13. 2005두5333), 귀문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권 취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세정-1579, 2005. 7. 11)

4. 사업장이 2개 시·군에 걸쳐 위치해 있는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납세지 관련 질의

【질 의】

하나의 사업장이 행정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2개 시·군에 걸쳐 위치해 있는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납세지 관련 질의

회 신

재산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및 제 234조의 10 규정에 의거 토지·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사업소

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0조 규정에 의거 ① 재산할은 사업장용 건축물의 면적 ② 종업원할은 종업원할의 총액을 재산할의 비율(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며,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거 ① 법인균등할은 사업장 소재지(법인등기부상 소재지 시·군) ②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종업원의 근무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건축물 면적에 따라 안분) ③법인세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규정에 의거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로 계산하되 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 구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용 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 196조의 6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 146조의 6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233, 2005. 4. 18)

5.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관련 질의

【질 의】

<지방세유권해석 세정실무회의 개최결과>

아파트 최상층의 경우 층고 1.5m이하의 7~8평 내외 다락방을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이 전용면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전용면적이 85m² 초과되어 감면조례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감면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세유권해석 세정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임

<안 건>

아파트 최상층의 층고 1.5m의 7~8평 정도 다락방 면적을 분양면적에 산입여부(감면조례상 감면여부)

<심의회원 의견>

- 시도 유권해석 검토반 16명과 우리부 회원 8명의 의견수렴 결과
 - 다락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13명
 - 전용면적에 불산입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으로 나타남

○과세론

- 다락방이 붙은 최상층은 분양가가 타층보다 높고 전망이 좋으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옥탑, 필로티 등도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과세면적에 포함하고 있어 다락방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이를 감면할 경우 조세의 형평성과 세정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됨

○경감론

- 다락방 높이 1.5m 이하는 건축법령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바닥면적에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과함은 무리가 있음
-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서비스 면적에 대한 과세는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

<문제점>

○세정 운영상

- 현재까지 현황과세 원칙에 의하여 옥탑, 필로티 등은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세정운영의 일관성 저해
- 과세시 이를 신뢰하고 분양받아 경감받은 납세자들의 불만 제기
(다락방아파트는 최근에 나타난 주택형태로 과세한 자치단체는 미파악)

○조례 규정 및 취지상

- 동 조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택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다락방면적이 전용면적인지 또는 바닥면적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에서 「주택공급면적」에는 층고 1.5m 이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조례의 규정을 “전용면적(주택공급면적)”으로 하든가, “전용면적에는 다락을 포함한다”는 보완 검토 필요

<세정운영실무회의 결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 이와 같은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326, 2005. 4. 20)

6.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질의

【질의】

2005. 5. 3.에 질의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회신

○ 연대납세에 대한 부과취소권

○○○은 ○○시 ○○구 ○○동 448-6 지상건물의 실 소유주이고 실제 납세의무자입니다. 당시(1997. 9. 경) 편의상 소유권을 ○○○ 1/2, △△△ 1/2로 등기하여 당시에는 납세자가 “△△△외 1인”으로 된 고지서를 받았는데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어 재소하여 “△△△외 1인”이란 납세자 명기로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첨부하는 고지서인 납세자가 “△△△, ○○○”로 된 고지서를 발부 받았지만 이 또한 부당하다고 실제 납세의무자인 ○○○이 재소하여 전액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과자체가 취소되므로 연대 납세의무자인 △△△에게도 부과처분최소의 효력도 연대하여 미쳐서 첨부한(취하된 고지서) 고지서 즉 납세자가 “○○○, △△△”으로 된 고지서와 “△△△의 1인”으로 된 고지서는 연대납세자인 ○○○이 부과금액 전체에 대한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으니 연대납세자인 △△△에게도 연대 하여 취소 되었다 생각되어 지는데 어떠한지요.

즉 “△△△의 1인” 내지 “△△△, ○○○”로 부과처분된 고지서 자체가 ○○○의 제소로 취소되어 무효화 되었으니 △△△에게도 연대하여 그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찌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 고지서가 무효 되었지만 새로이 납세자를 “△△△”으로 한 고지서를 새로 발부하여서 △△△에게만 부과처분(△△△에게만 부과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면)을 새로이 하고 이 고지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은 다시 또 해야 하는지요?

회 신

지방세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5조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9두 2222, 1999. 7. 13 참조)라고 사료됩니다.(세정-820, 2005. 5. 21)

7. 화해권고결정에 다른 수용여부관련 질의

【질 의】

회사정리법제157조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정리채권인 지방세 조세채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

원고 (주)○○○, 피고 ○○○도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울고법 2004나 83928호) 소송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기가 난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건개요

- 소제 : 2003. 11. 30
- 원고 : (주)○○○
- 피고 : ○○도 (대리인 ○○○, △△△ 변호사)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003가합 15894
- 세액 : 1,544,607,980(취득세 978,894,530, 등록세 567,713,450)
- 과세관청 : ○○시 ○○구청장, △△시장(당시 △△군수)
- 원심판결 : 패소 (2004. 10. 5)
 - => 임의변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과세관청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가하고,
 -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반채권과는 달리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이 있는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이행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움
- 항소 : 2004. 11. 1

쟁점사항

- 이 사건 조세채무는 회사정리 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소멸되고 정리회사의 책임은 면하는 즉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 존속하는 바,
-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정리회사인 (주)○○○의 임의변제가 있었는지가 관건임

재판부 및 담당변호사 의견

- 담당재판부
 - 하급심판결 이외에 현재 선례가 될만한 판결이 부재하다는 점, 법리적 판단여하에 따라 어느 일방의 전부승소 또는 패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 피고로서는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원고로서도 확실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안한 입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 상호 조정 타결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판결로써 법리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지 숙고한 후 차회 기일에 답변 할 것을 명하였음
- 담당변호사(○○○, △△△)
 - 수임변호사도 담당재판부의 조정에 관한 의사타진의 근거로 삼은 견해와 마찬가지로

견해를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갑” 설

- 이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정리채권이나,
- 원고와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리계획인가결정까지 이루어져 결국 조세채권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속하게 되었음
-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나,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임의변제 이행여부가 관건이나
-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이후 정리계획인가 결정까지 있음으로 인해 조세채권은 소멸함으로써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인바,
- 여기서 실권, 소멸로 면책되었다 함은, 조세채권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조세채무는 언제나 강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판결요지와 같은 추상적인 속성의 존재로 임의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의 이행에 있어 임의변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임의변제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조세채무의 강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추후 다투고자 하였음이 제반정황에 비추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임의변제 범리판단을 수궁하기 어려우므로 판결로서 범리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함

우리도 의견 : “을” 설

회 신

회사정리법제102조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방세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며(대법원 1994. 3. 25. 93누14417),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대법원 2001. 7.24. 2001다3122)이므로 귀문의 경우 과세권자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되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그 조세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는 ○ ○도지사가 적의 판단하여 조치할 시안이라고 사료됩니다.(세정-836, 2005. 5. 23)

8.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적용 질의

【질 의】

농공단지내에서 휴폐업된 공장용건축물을 취득 후 부속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당사는 ○○도 ○○시 ○○동 1720-33(○○농공단지) 소재의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4년 11월 15일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도세감면조례 제26조 조항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아 동년 12월 14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경락 받은 기계와 건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며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주인 ○○시와 분양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끝에 2005년 2월 18일경에 ○○시에서 당사로 매각할 토지대금이 결정이 되었고

이에 당사는 2005년 3월 10일 ○○시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경제과와 ○○도 기업유치과에서도 당사에 당연히 감면이 된다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시 세무과에서는 감면이 되질 않는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와 ○○도의 세무담당과 감면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시에서는 “시는 징수기관이기는 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 세무담당과 상담을 해보세요”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에 따라 당사는 ○○도 세무담당과 상담을 하던 중 “△△산업은 이미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 최초에 건물과 토지 둘 다 취득을 하였으면 감면이 될텐데 따로 따로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감면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며 또한 “토지가 임차 상태이기 때문에 감면이 되질 않는다.”라는 등 당사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물과 기계를 경락 받아 대금납부 등 정해진 기일 안에 업무처리를 해왔고 또한 ○○도가 이전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좋고 또한 당사의 입장등을 고려하여 2005년 2월 3일에 본점을 △△도에서 ○○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가 당사로 매각한 토지에 대한 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사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다 라는 해석에는 이전 입주업체는 폐업이 된 상황이고 당사는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째서 휴·폐업된 공장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토지가 임차상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폐업이 된 공장의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이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 앞서 순차적으로 4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 첫 번째 분양업체부터 네 번째 분양업체까지 분양계약 후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모두 계약해지가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의 소유입니다.

이에 당사는 ○○도세감면조례 제26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에 당사가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4년 12월 14일 폐업된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받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공장가동은 물론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 소유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라면 공장용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를 대체입주 이후 별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상태에 있던 공장에 대체입주한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76 2005. 03. 23.)

9.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세신고 후 재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여 취득세 신고가 이뤄진 상황에서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상속인의 지분을 달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재작성할 경우 취득세 정정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

망 ‘갑’이 2005. 2. 1. 사망함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전원은 망인의 소유였던 아파트를 상속인 중 ‘을’ 5분의 2, ‘병’ 5분의 1, ‘정’ 5분의 1, ‘무’ 5분의 1의 공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동년 3월 4일 체결하고, 동년 3월 5일 관할청에 취득세신고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위 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즉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의와 달리 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인들 전원의 진의에 따라 위 협의서의 사항 중 상속인 ‘을’ 4분의 1, ‘병’ 4분의 2, ‘정’ 4분의 1의 공유로 정정하거나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새로이 작성하여 종전 3월 5일에 신고하여 고지된 취득세를 취소하고 정정 혹은 새로운 합의서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중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에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세정-78 2005. 04. 07)

10. 지역주택조합과 지분제공사계약 체결로 인한 아파트 준공사 시공법의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질 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법인이 지분제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분양 및 시공함으로써 분양대금을 수급하여 대여금 및 공사비를 충당할 경우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시공법인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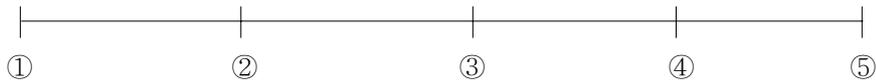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것(대법원98두17067, 1999. 11. 12) 이므로, 귀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단지 조합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비와 일반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없이 법인장부상 공사비를 분양아파트(대물)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도 조합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세정-722, 2005. 5. 16)

11. 취득세 수정신고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

【질 의】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1에 의한 60일 이내 수정신고 기산일은?

- ①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1/)
- ②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1/31)
- ③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2/28)
- ④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3/31)
- ⑤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5/31)



〈답 설〉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1의 “공사비의 정산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 함은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 후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지급시기 (②, ③, 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공사비의 최종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 (⑤)를 의미하고 때문에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①)후 수정신고 기산일은 공사완료 미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⑤) 5/31이 되므로, 5/3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건물 가사용 승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후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3회에 걸쳐 이뤄지고, 추후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질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

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중간에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하는 날마다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세정-336, 2005. 04. 21.)

12.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질의

【질 의】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내항화물운송목적용 선박을 수입통관후 국내항의 운항에 대한 항행구역을 지정받았으나 내항화물운송업의 등록을 미필한 자에게 임차하고, 임차인이 추후 내항화물운송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감면대상이 되는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연부취득(계약금 납부)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하였을 경우, 계약금 지급시와 연부금 지급시마다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1>

시행령 제229조에 의하여 해운법 제34조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해석

사업자의 현황

당사는 2003년 1월 6일 설립하여 2003년 3월 7일 해운법 제 34조에 의한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회사로 2003년 7월 13일 내항화물운송목적용 선박을 수입통관하여 선박안전법 제5조(선박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 2003년 10월 22일 국내항의 운항에 대한 항행구역을 지정받아 선박임차자(10월 22일 당사에는 선원, 선박관리업등록만 되어있었으며 내항화물운송업의 등록은 2004년 3월 8일임)에게 10월 22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내항화물운송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 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에 따르면 해운법 제26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을 등록한자 또는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리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이미 해운법에 따라 선박대여업등록을 필한자가 수입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을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행구역 및 용도의 검사필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며, 동시행령의 규정취지가 내항항로에 의 신규선박의 투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내항화물운송용으로의 사용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계약이후 실질적으로 내항화물운송용에만 사용된 것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이다.

〈을 설〉

선박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당시에는 선원 및 선박관리업만 등록되었으며 내항화물운송업등록은 2004년 3월 3일에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후 내항화물운항의 실질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령 제229조는 해운법 제34조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업 등록자임 여부를 확인 또는 예측하여 대여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위 양설에 대하여 귀부의 회신을 바랍니다.

<질의 2> : 수입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최초의 취득시기와 감면적용 사업자의 현황

당사는 2004년 11월 3일 설립하여 2004년 11월 17일 선박을 3개월 거치 3년 연부조건(36개월 상환)으로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수입 취득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후 선박대여업의 등록은 2004년 12월 19일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연부금의 최초의 지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2005년 4월 15일로 도래함.

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 합니다.

(1) 위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8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규정한 시행령 제73조 3항에 따르면 선박대여업의 등록일 이후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매회 연부금의 지급시기에 50%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사업자가 선박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박대여업의 등록일 전에 지불하였고 잔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선박대여업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계약금의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되지 않고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연부금 상환

분에 대하여는 매회 각각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9조 제1호에서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한 선박을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항행구역 및 용도의 검사필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용으로 대여할 것이 명백하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연부취득 후 선박대여업을 등록하여 감면조건을 성취한 다음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시점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므로 선박대여업 등록 전 계약금과 선박대여업 등록 후 지급하는 연부금 모두 취득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715, 2005. 5. 16)

13.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여부 질의

【질 의】

도소매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2002. 11. 22 설립)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추가 후 사업자등록상의 하자가 있어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에 해당되므로 귀문과 같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02년 11월 22일 이후 현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지방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업종추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세정-555, 2005. 05. 03)

14. 매매대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시기에 대한 질의

【질 의】

수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적률변경시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한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후 용적률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에 의거 추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시기에 관하여

당사는 2002년 11월 22일에 ○○ 광역시내에서 도·소매 자동차부품업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창업준비 중 2003년 7월 8일에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추가하여 동일자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내국법인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인데, 외국법인으로 발급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는 정정은 불가능하고 폐업을 내고 다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내용

1. 2002. 11. 22 법인설립등기(도·소매 자동차부품)
 2. 2003. 07. 08 종목추가(제조 자동차부품)
 3. 2003. 07. 08 사업자등록발급(504-84-00593)
- 대표이사는 미국 시민권자임(주식보유)

1. 위와 같을 때 국내법인이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외국법인으로 부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처리상 정정이 되지 않아 부득히 폐업을 내고 다시 신규로(법인설립일자는 변동없이) 발급 받았을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등 조세혜택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 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

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추가 신고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약정계약서상의 사정변경(용적률 변경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당초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매대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산세 적용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714, 2005. 5. 16)

